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019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2

I. 개요

1.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01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1.

(3) 회 부 일 : 2026. 4.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4조(결격사유) (생략)	제54조(결격사유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

	<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80조(면허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0조(면허취소 등) ① ----- ----- ----- ----- ----- ----- ----- -----.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제54조제1항-----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4조1)는 조리사 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로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2)

1) 「식품위생법」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3)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4)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④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5)에 따라 해당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면허를 당연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53조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7)에 따라, 지방자치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소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5) 「식품위생법」

제80조(면허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6) 「식품위생법」

제53조(조리사의 면허) ①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체의 장은 조리사 면허 발급 시 신청자가 제출한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 또는 전문의 진단서’를 통하여 결격사유(정신질환, 감염병, 약물중독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행정 관청이 진단서의 진위를 검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면허 신청일까지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결격사유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리사 면허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2024년 1월 법률 제20049호로 공포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⁸⁾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제81조제1항에서 같다) 1장
2. 법 제54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4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5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8)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동 개정안 외에 강대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⁹⁾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¹⁰⁾에 따르면, 사상·신념, 건강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¹¹⁾가 금지되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

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9) < 기타 발의법안 예시(강대식의원 대표발의 7건) >

모자보건법 개정안(2214681호, 발의일 2025.11.2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2216303호, 발의일 2026.01.23)
노인복지법 개정안(2214682호, 발의일 2025.11.28)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2218017호, 발의일 2026.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216304호, 발의일 2025.1.23)	화장품법 개정안(2218018호, 발의일 2026.4.1.)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2216302호, 발의일 2026.01.23)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11) 「개인정보 보호법」

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따라서,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유무’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기관 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치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지, 그리고 그 공익적 필요성이 사익의 침해보다 우월한지에 대한 입법 정책적 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대상기관과 개인 정보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기관 및 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등은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2014년 9월 안전행정부와 법제처는 관계기관 간 정보 제공에 관하여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는 표준입법모델을 제시한 바 있음.¹²⁾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2) [참고] 기관 간 정보공유 표준입법모델

<자료 제공의 요청 관련 입법례>

「문신사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이 제5조 각 호 또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 사실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의 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등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신사의 면허, 문신업소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셋째**,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8)13)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개별법상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조항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결격사유 확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보완하자는 개정안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그러나 개인의 정신질환자 해당 여부나 마약

13)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결정, 2018. 4. 12.)

등 약물중독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대상기관이 어디인지, 해당 기관에서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한지 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공유가 가능하더라도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은 개인 민감정보로서 조리사 면허 신청자가 공유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보건복지부:

-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8)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개별법상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조항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결격사유 확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보완하자는 개정안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국민 건강권 확보 및 식품안전보호 측면에서 개정안에 찬성함. 다만, 조리사 개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므로, 민감 정보의 과도한 조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조회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기관 간 정보공유 표준입법모델
-------------	-------------------------

자료: 법제처, 안전행정부('14년 9월)¹⁴⁾

□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한다.

- 법률에서부터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
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야 한다.

□ 과세정보 요청 입안 사례

법률 00조 【자료제공의 요청】

- ① 국토교통부장관(요청기관)은 제0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
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이용목적)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요청정보): 세무관서의 장(대상기관)
 2. AAA: A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얻은 정보
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
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시행령 00조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 ① 법 제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2. aaa

※자료: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현황(2024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14) 법제처·안전행정부, 2014년 9월 5일. 보도자료: 법제처·안행부, 표준 입법모델로 협업 속도 낸다! - 기관
간 정보공유 가속화를 위해 표준 법령모델 마련 -